

##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09. 7. 24.(금) 10:45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송도균 부위원장  
이경자 위 원  
이병기 위 원  
형태근 위 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 가. 성원보고
  - 나. 국민의례
  - 다. 개회선언
  -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및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관련 후보자 선정 등에 관한 건 (2009-32-154).....비공개**

**2) 기간통신사업자 전용회선 사업양수 등의 인가에 관한 건 (2009-32-155)**

○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에 따라 SK텔레콤(주)가 신청한 SK네트웍스(주)에 대한 전용회선 사업양수 등의 인가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양수도 대상)

· 전용회선 설비 인수(광선로(내관) 640km, 광케이블 83,469km)

· 전용회선 사업('08년 기준 매출액 4,149억원, 법인 2,763개)

· 국제전용회선 재판매사업('08년 기준 매출액 5.6억원)

※ SKT는 사업수행을 위한 설비·고객·영업권 및 인력 등을 SK네트웍스로부터 인수

- (거래금액) 15,206억원 (현금 8,928억원 지급, 부채 6,278억원 인수)

○ **인가 조건**

- (주)SKT는 SK네트웍스(주)에 기존 부여된 기간통신사업 허가조건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주)SKT는 SK네트웍스(주)의 사업양수를 위해 제출한 사업 및 수행계획서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3)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주)LG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경품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009-32-084~085)**

○ 차양신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와 (주)LG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경품류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논의 하였으나, 경품 제제가 처음이고 위법성 판단 기준과 조치안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해 차기에 재상정 하기로 함.

**4) 2009년도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관한 건(2009-32-156)**

○ 최재유 융합정책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09. 2. 6.)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영역 확대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위한 '09년도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서울 1개 중재부 증설 및 조정중재 심리 경비,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신규 광고물 제작 등에 필요한 소요재원(1,425백만원)을 추가 편성

※ 언론중재위 지원('09년 당초 80억원) : 34억원 증액 요청 → 14.25억원 반영

- 동 재원은 '09년 여유자금운용 규모(90,114백만원)에서 충당

5)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2009-30-157)

-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주)에이치씨엔 금호방송 등 19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건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주)에이치씨엔 금호방송 등 19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허가를 의결하되 아래의 조건을 부과

사업자명	조건 내용
공 통 (19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총 방송수신료의 25%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li> <li>○ 매 반기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을 다음 반기 시작 15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li> </ul>
(주)씨씨에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년 10월 31일까지 디지털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li> <li>○ 2010년 3월 31일까지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는 가입자에 대해서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여야 하고, 2010년 4월 20일까지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li> </ul>
(주)한국케이블TV 전남동부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3월 31일까지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는 가입자에 대해서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여야 하고, 2010년 4월 20일까지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li> </ul>
대구케이블방송(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허가 기간 동안 이사회 전체구성원의 과반수를 방송전문가·변호사·회계사·방송구역 내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 사외이사로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이사회 개최에 따른 이사회 의사록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li> <li>-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 결과를 2009년 8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li> </ul>
(주)한씨엔, (주)한국케이블TV 대전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허가 기간동안 이사회 전체구성원의 과반수를 방송전문가·변호사·회계사·방송구역내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 사외이사로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이사회 개최에 따른 이사회 의사록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li> <li>-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 결과를 2009년 8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li> <li>○ 홈쇼핑사업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계획을 이행하고 다음 분기 시작일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li> <li>○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주 또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대여금과 지급보증, 담보를 해제하여야 하며, 재허가 이후에도 대여, 담보, 지급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li> <li>○ (주)한씨엔은 2009년 11월 30일까지 동일 구역내의 SO와 통합하여야 한다.</li> </ul>

- (주)신라케이블방송·(주)아름방송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 추가로 심사를 진행한 후 재허가 여부를 의결하기로 함.

## 사. 보고사항

- 아래 보고사항 2건을 상정하고자 하였으나, 시간 제약으로 상정하지 못함.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사항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

## 아. 기 타

## 6. 폐 회 (17:40)